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55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 허성무·김동아·한정애

이강일 • 서미화 • 권향엽

박선원 · 송재봉 · 허종식

오세희 · 김교흥 · 김문수

이병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 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용)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 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 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점관리 술혁신 촉진법 | 제2조제5호 의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 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 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워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